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 어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황 희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문서등의 정의 및 국어책임관 지정 확대,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등을 평가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어기본법」이 개정(제18429호, 2021.6.15. 공포, 2021.12.16. 시행)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국어책임관 지정 범위,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등 평가 및 공개 등에 대해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(안 제3조 제1항, 제3항)

- 1) 국어책임관 지정 기관 확대(공공기관, 특수법인 추가)에 따라 확대된 기관도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, 통보하도록 함.
- 2) 현행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장의 국어책임관 추진실적 보고 체계를 변경(문화체육관광부 장관 → 소속 중앙행정기관장)하고, 확대된 공공기관·특수법인도 국어책임관의 추진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.

나. 공문서 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(안 제11조, 제12조의2)

- 「국어기본법」에 따라 공문서, 공공기관의 확대된 범위를 명시함.

다. 공문서 등의 평가 및 공개(안 제11조의2 신설)

- 「국어기본법」에 따라 위임된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평가에 대한 평가 대상, 평가 주기, 평가 절차, 평가 방법, 평가 공개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8.9.~9.23)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제1항 중 “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특수법인(민법과 상법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, “공무원을”을 “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”로, “국어책임관으로”를 “국어책임관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중앙행정기관”은 “중앙행정기관의 장”으로, “그 소속 기관의 장과”는 삭제하고, “소속”을 “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공공기관, 특수법인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소속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공문서의”를 “공문서등의”로, “공공기관의 공문서를”을 “공공기관등이 공문서등을”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공문서 등의 평가 및 공개) ①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받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썼는지 여부

2.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였는가의 여부

3. 그 밖에 공문서등의 작성에서 지켜야할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대상 기관, 평가 기준과 방법, 평가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도의 평가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평가를 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2 제3항 중 “공문서”를 “공문서등의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시기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의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를, 2022년 시범평가를 거쳐 2023년 12월31일까지 종료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<u>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해당 기관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<u>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</u> 하고,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3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----- ----- <u>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특수법인(민법과 상법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. 이하같다)</u> ----- <u>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</u> --을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</u> 특별시장·특별자치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시·도지사에게 <u>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</u>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.	③ <u>중앙행정기관의 장</u> ---(삭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공공기관, 특수법인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소속</u> -- ----- ----- -----
제11조(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)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	제11조(공문서 <u>등</u> 의 작성과 한글

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2. (생략)

<신설>

사용) -----

-----등이 -----등을 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공문서등의 평가 및 공개)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받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썼는지 여부

2.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였는가의 여부

3. 그밖에 공문서등의 작성에서 지켜야할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대상 기관, 평가 기준과 방법, 평가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

제12조의2(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) ① ~ ② (생략)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·개정, 교과용 도서 제작, <u>공문서</u> 작성 및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	<u>도의 평가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</u> ④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평가를 받은 기관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 제12조의2(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문서등의</u> -----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534